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7. 2.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 1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8. 6. 13.

다. 상징일자 : 제137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위원회(2008. 7. 2)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창전동 소재 와우근린공원 내 와우산 배드민턴장의 시설이 보강(지붕 설치 등) 되면서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 규정 및 지방 공기업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이용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9조)
-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마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와우산 배드민턴장 시설 사용료를 규정함(제10조 관련 별표)

다.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및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3. 검토보고의 요지 (한두호 전문위원)

- 안 제9조제1항은 현재까지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은 주간에만 개방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한 좋은 시설을 야간에는 구민이 이용할 수 없어 민원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체육시설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어 구민이 운동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구민의 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 안 제23조는 체육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수준 높은 관리능력을 가진 수탁자가 참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설관리 수준향상과 구민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규상 하자가 없고 타구에서도 이러한 추세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안 별표에서 와우산 배드민턴장 시설 사용료는 1면당 1시간 기준 2,000원으로(1면당 2인) 타 자치구 1인 2시간기준 강서구 3,000원, 중구 2,200원, 송파구 2,000원 보다 낮게 책정하였으나,
- 현재까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부응하여 사용료 없이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면 시설을 타구 시설 사용료보다 적게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를 책정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사용료를 징수하면 민원은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홍보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